

제 1331 호

1986.12.12

제	보도계획공시	공보관	공	공
발	행	인	인	인

발행인 서울특별시청 영 보 관
 편집인 서울특별시청 영 보 관
 인쇄 서울특별시 중랑구 신내동 3가길 11-3
 전화 791-6111-3
 서울특별시 중랑구 신내동 3가길 11-3
 전화 795-3337

시 보

차 례

- ◎ 고 시
 - 제 879 호 : 도시계획사업 (도로개설) 실시계획인가 3
- ◎ 공 고
 - 제 684 호 : 서울특별시회계관제공무원직인동류 3
 - 제 685 호 : 개포택지개발사업지구개발계획변경환지에정지변경및환지계획
공람 8
 - 제 687 호 : 공원시설 (테니스장) 관리위탁 8
 - 제 689 호 : 도시계획사업 (도로) 실시계획공람 9
- ◎ 예 규
 - 제 485 호 : "서울특별시청도문서고" 관리공무원부무규정 10

(이면계속)

영									
관									

1. 시 공무원은 반드시 읽어야 한다.
2. 시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서울특별시

◎ 사 명

◎ 출석통지

○ 관악구인사위원회 17

고 시

서울특별시고시제 879 호

도시계획사업(도로개설) 실시 계획인가

1. 서울특별시고시제 390 호('83.7.26)로 시설결정하고 서고 제 442 호('83.8.26)로 지적승인된 도시계획도로(신도림 1635-133 호)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 25 조 동시행령제 26 조, 27 조 및 동법 시행령제 6 조의 권한위임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사업(도로개설공사) 실시 계획을 인가하고 다음과 같이 이를 고시 한다.
2. 관계 도서는 관악구청 토목과에 비치하고 토지 및 건물의 소유자와 이해 관계인에게 열람하도록 함.

1986. 12. 12.
서울특별시장

- 가) 사업시행지: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동 1635-133 호 도로
-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도시계획사업(신림 1 동 1635-91 주변도로개설공사)
- 다) 사업의 규모: 도로개설
B=5-6 m L=18 m

- 라) 사업의 착수 및 준공 예정일
 - 착공: 시행인가일로부터 7 일 이내
 - 준공: '86.12~'87.2.28.
- 마)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및 소유권여의의 권리명세: 별첨
- 바) 토지(건물) 소유자와 토지수용법 제 4 조 3 항의 규정에 의한 이해 관계인의 주소, 성명: 별첨
- 사) 시행인가 설치도서 별첨(계제생략)

공 고

서울특별시공고제 684 호

서울특별시 회계관계 공무원직인 등록

서울특별시 조례 제 2113 호('86.9.22) 호에 의거 기구명칭 변경에 따른 소방학교 회계관계 공무원 직인(서울특별시 회계관계 공무원 직인 규칙 제 7 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폐기 및 신고등록하고 동 규칙 제 11 조에 의거 이에 공고 한다.

1986. 12. 12.

서울특별시장

1. 직인등록조서: 별첨

직 인 폐 기 신 고 서

회 제 명 : 서울특별시 일반회계
 관 서 명 : 서울특별시 소방학교
 직 명 : 서울특별시 소방교육대분임경리관
 1983년 7월 18일부터
 사용기간 : 년 월 일까지

폐기당시인영



직 인 폐 기 신 고 서

회 제 명 : 서울특별시 일반회계
 관 서 명 : 서울특별시 소방학교
 직 명 : 서울특별시 소방교육대분임지출원
 1983년 7월 18일부터
 사용기간 : 년 월 일까지

폐기당시인영



직 인 폐 기 신 고 서

회 제 명 : 서울특별시 일반회계
 관 서 명 : 서울특별시 소방학교
 직 명 : 서울특별시 소방교육대세입세출외원금출납원
 1983년 7월 18일부터
 사용기간 : 년 월 일까지

폐기당시인영



직 인 폐 기 신 고 서

회 계 명 : 서울특별시 일반회계
 관 서 명 : 서울특별시 소방학교
 직 명 : 서울특별시소방교육대정부유가증권취급공무원
 사용기간 : 1983년 7월 18일부터
 년 월 일까지

폐기당시인영



직 인 폐 기 신 고 서

회 계 명 : 서울특별시 일반회계
 관 서 명 : 서울특별시 소방학교
 직 명 : 서울특별시 소방교육대물품관리관
 사용기간 : 1983년 7월 18일부터
 년 월 일까지

폐기당시인영

직 인 폐 기 신 고 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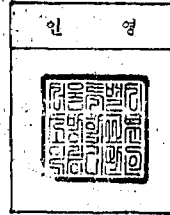
회 계 명 : 서울특별시 일반회계
 관 서 명 : 서울특별시 소방학교
 직 명 : 서울특별시 소방교육대 물품출납원
 사용기간 : 1983년 7월 18일부터
 년 월 일까지

폐기당시인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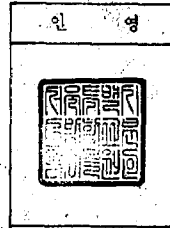
직 인 등 록 조 서

회 계 명 : 서울특별시 일반회계
 관서명 (청소) : 서울특별시 소방학교
 직 명 : 서울특별시 소방학교 분임경리관
 사 용 개 시 일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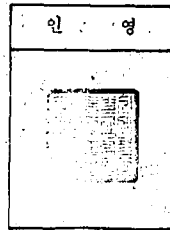
직 인 등 록 조 서

회 계 명 : 서울특별시 일반회계
 관서명 (청소) : 서울특별시 소방학교
 직 명 : 서울특별시 소방학교 분임지출원
 사 용 개 시 일 :



직 인 등 록 조 서

회 계 명 : 서울특별시 일반회계
 관서명 (청소) : 서울특별시 소방학교
 직 명 : 서울특별시 소방학교 세입세출의 현금출납원
 사 용 개 시 일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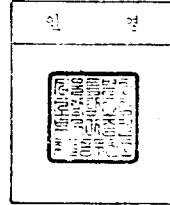
직 인 등 록 조 서

회 계 명 : 서울특별시 일반회계

관서명 (청소) : 서울특별시 소방학교

직 명 : 서울특별시 소방학교 정부유가증권 취급공무원

사용 개 시 일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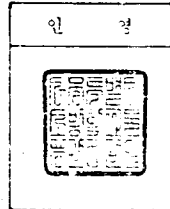
직 인 등 록 조 서

회 계 명 : 서울특별시 일반회계

관서명 (청소) : 서울특별시 소방학교

직 명 : 서울특별시 소방학교 물품관리관

사용 개 시 일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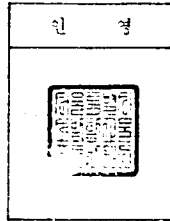
직 인 등 록 조 서

회 계 명 : 서울특별시 일반회계

관서명 (청소) : 서울특별시 소방학교

직 명 : 서울특별시 소방학교 물품출납권

사용 개 시 일 :



◎서울특별시공고제 686 호

개포택지개발사업지구개발계획변경
환지에정지변경및환지계획공람

1. 건고시 제 76 호 ('82.2.18) 의 개포택지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승인된 개포택지개발 사업시행중 일부토지 이용계획이 변경되어 이에따라 환지계획 일부중 환지계획 변경 조정하고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 47조의 규정에 의한 환지계획인가 코져 동법 제 33 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지계획 변경 (안) 을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공고일로 부터 14 일간 공람한다.
2. 관계도서는 다음 장소에서 보여드리고 있으니 의견이 있을시는 공람기간내 이의신청을 하여 주시기바라며 토지 소유자에게는 개별통지할 것이나 미수령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는 이 공고로 통지에 갈음함.

1986.12.12

서울특별시

가. 사업명 : 개포택지개발사업
 나. 시행면적 : 당초 : 6,465,681 ㎡
 변경 : 6,497,276 ㎡
 추가권입 : 28,595 ㎡

* 양재대로 절개지가 사업지구내 편입다. 시행위치 : 서울특별시 강남구 포이동, 개포동, 염곡동일대라. 특기 사항

- 1) 환지계획은 평가식 환지설계방식에 의거 수립하되 쌍방토지 평가지수의 25%이내로 하되 최소필지 규모 (117 ㎡) 이상으로 한다.
 - 2) 추가 편입되는 토지의 평가는 타토지와 동일시점인 실시계획승인일 ('82.2.18) 로 한다.
 - 3) 환지대상이 되는 토지의 최소면적 및 평가지수의 기준은 토지면적 198 m 이상, 평가과수 36,000 이상으로 하고 기준이하 토지는보류지에 권리면적을 산정하여 공전청산
 - 4) 제자리 환지를 원칙으로 하나 제자리 환지가 불가능한 토지는 토지내 인근 가용해비지에 비환지한다.
- 마. 공람장소 :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
 구획정리과 (731-6351 ~ 4)

◎서울특별시공고제 687 호

공원시설 (테니스장) 관리위탁

1.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장안동 356번지 장안명 근린공원내 시설되어 있는 테니스장을 도시공원법 제 6 조 3항에 의거 관리 위탁하고 이를 공고 한다.

2. 관계 도서는 동대문구청 공원 녹지과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인다.

1986.12.12

서울특별시

가. 위치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장안동 356번지

나. 시설 종류 및 명칭 : 테니스장

다. 위탁 관리자 : 동대문구 상봉동 127-39번지 김용환

라. 시설물 내역 :

• 테니스장 : 코트 1면, 연습장 1면 954㎡

• 관리실 : 관리사무실 및 샤워실 1동 38.88㎡

창고 및 숙직실 1동 13.2㎡

마. 관리기간 : 1987.1.1-1987.12.31

바. 관계도면 : 생략

◎ 서울특별시공고제 689 호

도시계획사업(도로)실시계획공람

1.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전농3동52번지의외 20필지에 대한 도시계획사업(도로)시행 허가에 앞서 도시계획법 제25조 2 및 동법 시행령 제27조 2 규정에 의거 관계서류를 공람한다.

2. 토지 소유자와 이해 관계인에게는 개별 통지 할것이나 그 수령과에 대하여는 이 공고로 갈음한다.

3. 관계 도서는 동대문구청 토목과및 건설관리과에 비치하여 공고일로부터 14일간 일반인에게 공람하고 있으나 본 사업 시행에 따른 의견서는 공람공고 기간내 공람장소에 제출하지기 바람.

1986.12.12

서울특별시

-공람요지-

1. 사업시행지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전농3동 52주변 하수도 포장공사
3. 사업규모 : 하수도관 D = 450-700mm
L = 382.5 m
4. 사업시행자 : 서울특별시
5. 사업착공 및 준공연월일 : 인가일로부터 12일간
6.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 : 생략
7. 토지 소유자의 토지 수용법 제4조 3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 주소, 성명 : 별첨
8. 공람장소 : 동대문구청 토목과및 건설관리과
9. 공람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10. 기타 상세한 사항은 동대문구청 토목과에 문의 바람.

예 규

◎ 서울특별시예규제 485 호

“서울특별시 청도문서고”
관리공무원 복무규정

제 1 조 (목적) 이 규정은 경상북도 청도군청 소재 “서울특별시 청도문서고” 관리공무원(이하 “관리공무원”이라 한다)의 복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관리공무원 배치) 청도문서고에 보관된 문서를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공무원을 현지에 배치 근무하게 한다.

- 1. 행정 6급 또는 7급 1명

제 3 조 (직무) 관리공무원은 시민과장의 지휘 감독을 받아 다음 업무를 수행한다.

- 1. 보존문서의 정리 및 관리
- 2. 문서고내 각종장비 및 대장관리
- 3. 보존문서의 화재 및 도난의 방지
- 4. 문서의 대출, 열람 제공 및 복사
- 5. 출입자 통제
- 6. 기타 시민과장으로부터 지시받은 사항

제 4 조 (근무) ○관리공무원은 문서고내 지정된 사무실에서 근무하여야 하며 근무상황 카-드를 비치하고 출근시

간 전까지 동행하여 직접 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관리공무원은 문서고내와 그 주변 환경 정리, 출입자 통제 등 경비에 철칙을 기하여야 하며 다음의 장부를 비치 작성 정리하여야 한다.

- 1. 근무일지 (별지 제 1호 서식)
- 2. 보존문서 목록대장 (별지 제 2호 서식)
- 3. 보존문서 열람 및 복사대장 (별지 제 3호 서식)
- 4. 보존문서 대출대장 (별지 제 4호 서식)
- 5. 출입자 대장 (별지 제 5호 서식)
- 6. 행정 장비 및 비품대장 (별지 제 6호 서식)
- 7. 기타 필요한 사항

제 5 조 (근무일지) 관리공무원은 별지 제 1호 서식에 의한 근무일지에 매일 근무상황을 기재하고 시민과장(청도군 내무과장 대행)에게 보고하고 확인을 받아야 한다.

제 6 조 (보존문서의 열람 및 복사) ○관리공무원은 문서고에 보관된 문서, 도면, 대장등의 대출, 열람 복사 및 관제인의 문서고내 출입은 시민과장의 지시를 받아 실시하여야 한다.

○시민과장으로부터 지시받은 문서, 도면, 대장의 열람과 복사를 실시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 3호 서식에 열람 및 복사내용을 기록 정리하여야 한다.

제 7 조 (보고) ○관리공무원은 문서고관

라에 이상이 있을 때에는 즉시 그 상황을 시민과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판리공무원은 문서고 관리 전반에 대한 상황을 매 3개월 1회씩 정기적으로 상경하여 시민과장에게 보고하고 당면 지시사항을 수명받아야 한다. 제 8 조 (준용규정) 이 규정에 규정한	이외 기타 관리공무원과 복무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관공무원법",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및 "직종별별서 지방공무원 근무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부 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

[별지 제 1 호 서식]

군 무 일 지

○ 198 년 월 일 (요일)	<table border="1" style="margin: auto;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 style="padding: 2px;">담</td> <td style="padding: 2px;">당</td> <td style="padding: 2px;">국</td> <td style="padding: 2px;">장</td> <td style="padding: 2px;">결</td> </tr> <tr> <td style="height: 30px;"></td> <td></td> <td></td> <td></td> <td></td> </tr> </table>	담	당	국	장	결					
담	당	국	장	결							

군 무 자	①
-------	---

1. 근무사항
 [주요업무 처리상황]

 [방화 및 경비상황]

2. 지시받은 사항 및 조치

지 시 사 항	조 치
3. 특기 사항	

* 16 일 까지 작성

별지 제 2호 서식								
보 존 문 서 목 록 대 장								
일련 번호	생산 년도	보존 기간	분류번호	기능명칭 및 부제목	권수 (매수)	구 분	소관부서	파기년월일
						*구분에는 공문, 도면 대장등으로 표시	*소관부서 는 파기위 명칭	
* 16 절 가로 작성								
별지 제 3호 서식								
보 존 문 서 열 략 및 복 사 대 장								
일 일	구분(열람, 복사)	계	목	복사권수	열람자인적사항	비 고		
* 16 절 가로 작성								

[별지 제 4호 서식]

보존문서 대출대장

대출 일시	보존문서(대장)명	대출요청자				대출 기간	대출 근거	관납 여부	확인
		소속	직급	성명	수령인				

• 16절 가로 작성

[별지 제 5호 서식]

출입자대장

출입일시	출입자성명	소속	직위	출입목적	진화	고

• 16절 가로 작성

[별지 제 6 호 서식]						
행정 장비 및 비품 관리 대 장						
품 명	규 격	수 량	구 입 년 도	용 도	비 고	
16 절 세로 작성						
사 령						
◎ 1986 년 12 월 3 일 자 명 제 483 호						
성 명	발령부서	발령 직 급	원부서	직 급		
이영균	은명구	지방행정주사보	은명구	지방행정서기		
이행자						
소 속	직위(직급)	성 명	여행국	여행기간	여행 목적	경 비
강남구	구청장 (이사관)	신성호	일 본	86.12.7~12.13 (7 일 간)	서울-통교야매결연 합동친선대회참석	시비부담
◎ 1986년 11월 27일자 서울특별시 공무원교육원 행정주사 윤 선 중 행정사무관에 임함.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진출을 명함. 지방행정사무관에 임함. 용산구 근무를 명함.			◎ 1986년 12월 5일자 서울특별시, 환경복지국 환경과 지방행정사무관 조 경 호 행정사무관에 임함. 서울특별시 공무원교육원 근무를 명함.			

◎ 1986 년 12 월 5 일 자 서울특별시 공무원교육원 박 용 시 행정사무관 지방행정사무관에 임함. 대 통 영 이사관에 김함., 서울특별시 상공과 표준계장제 포함.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민방위국장에 포함. 대 통 영 서울특별시 민방위국장에 포함.				
◎ 1986 년 12 월 10 일 자 영계 487 호				
성 명	발령부서	발령직급	현 부 서	현 직 급
윤 두 명	내 무 국	지방부이사관	내 무 국	지 방 서 기 관
조 삼 섭	"	"	"	"
◎ 1986 년 12 월 11 일 자 영계 488 호				
성 명	발령부서	직 위 (호봉)	직 급	비고
김 전 옥	동 부 병 원	방사선안전관리기사(2)	지방행정직 6급상당	신규
이 성 희	경찰국 경무과	영양사(1)	지방행정직 7급상당	"
◎ 1986 년 12 월 12 일 자 영계 489 호				
성 명	발령사항	현 부 서	직 급	
박 용 창	지방행정주사에 임함.	공무원교육원	행정주사	
성 명	발령사항	현 부 서	직 급	
김 용 덕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 31 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사무관으로 대우함.	조사담당관	지방행정주사	
송 환 상	"	시 민 과	"	
노 명 원	"	보건위생과	"	
박 용 창	"	공무원교육원	"	

성명	발령사항	현부서	직급
임창석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 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사무관으로 대우함.	시립운동장	지방행정주사
송기한	"	종로구	"
박갑출	"	중구	"
강의근	"	용산구	"
유재곤	"	성동구	"
이상호	"	성북구	"
정우용	"	도봉구	"
허응도	"	은평구	"
최남규	"	서대문구	"
유구현	"	마포구	"
한상섭	"	간서구	"
최승석	"	구로구	"
장유식	"	영등포구	"
장대복	"	관악구	"
염훈현	"	강남구	"
권명기	"	강동구	"
최병진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 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기좌로 대우함.	동대문구	지방지적기사
송세훈	"	환경과	지방보전기사
문락빈	"	강남구보전소	"
박승돈	"	동작구	지방농림기사
전동건	"	북부수도관사업소	지방토목기사
김회태	"	청담배수계사무소	지방전기기사
최장규	"	공업시험소	지방기계기사

출 석 통 지 서

인 적 사 황	성명	최광덕 (崔光德)	소속	관악구봉천7동	직명	지방행정주사
	본적	인천직할시 동구 내동 167				
	주소	서울시성동구마장동 331-2				
	출석이유	인사위원회 출석진술				
	출석일시	1986년 12월 27일 10시 00분				
출석장소	관악구청 기획상황실					

- 유의사항
1. 진술을 위한 출석을 원하지 않을 때에는 하기 진술권 포기서를 즉시 제출한다.
 2. 사정에 의하여 서면진술을 하고자 할 때에는 징계위원회 개최일 전일까지 도착하도록 진술서를 제출할 것.
 3. 정당한 사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지정된 일시에 출석하지 않거나 서면진술서 또는 진술포기서등도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진술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인정 처리한다.

공무원 징계령 제 10조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귀하의 출석을 통지합니다.

86년 12월 일

관악구인사위원회위원장 ㉑

최 광 덕 귀하

진 술 권 포 기 서

인 적 사 황	성명		소속		직명	
	본적					
	주소					

본인은 귀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하는 것을 포기합니다.

19 년 월 일

성명 :

관악구징계위원회위원장 귀하

공 지 사 환

강 남 구

종무 01117 - 64060 545-2279 1986. 12. 19.

수 신 : 수신처 참조

제 목 : 공무원 사망

- 1. 우리구 소속 아래 공무원이 사망하였기에 통보 합니다.
- 가. 아 래

소 속	직 명	성 명	사 망 일
강남구 서초1동	지방행정서기	정 명 호	86. 12. 6

강 남 구 청 장